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5. 10. 6.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.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개정근거

- ㅇ 주민등록법 제2조2항
- ㅇ 지방자치법 제95조

3. 주요골자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 제2조3항 (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)을 읍.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.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권한위임)중 제3항을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권한의 위임) 1. 생 략 2. 생 략 3.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. 생 략	제2조 (권한의 위임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삭 제> 4. (현행과 같음)

검 토 보 고 서

□ 조 례 명

○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□ 주 요 내 용

○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.면 출장소장에게 위임 (안 제2조 제3항 삭제)

□ 개 정 사 유

○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가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읍.면장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어 화순군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와 균형을 맞추고 동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.

□ 검토결과 (의견)

○ 본 조례 개정(안)은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1995. 10. 30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나. 제출일자 : '95. 10. 19

다. 회부일자 : '95. 10. 19

라. 상정일자 : 제 38 회 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('95. 10. 30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병일

나. 제 안 이 유

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.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 하고자 함.

다. 개 정 근 거

○ 주민등록법 제2조2항

○ 지방자치법 제95조

라. 주 요 골 자

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 제2조3항(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)을 읍.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.

3. 검토보고 요지

본 조례 개정(안)은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생 략

5. 토론요지

생 략

6. 심사경과

원안가결

7. 첨 부

가.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구조문 대비표